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확대,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개 선 등을 내용으로「개인정보 보호법」및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」이 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O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을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는 것 으로 개정함(안 제7조제2항)
- O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모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등록 예외 대상을 정비함(안 제7조제3항)
- O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고,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9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)

- 4.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
- 5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등록·공개한다"를 "등록하고,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
 - 가. 회의 참석 수당 지급, 자료·물품의 송부,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 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
 - 나.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
 - 다.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

제9조제1항제2호 중 "법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"을 "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4조의2제2항, 제25조제6항(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
- 2. 평가 분야 및 항목
- 3.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
- 4. 제3호의 분석 ·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
- 5. 영향평가의 결과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
-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)	제7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	2
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	
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	
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	
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	
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<u>등록</u>	<u>등록</u>
<u>· 공개한다</u> .	하고,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
	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
	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할
	<u>수 있다</u> 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
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	
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	
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법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	3.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
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	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
<u>일</u>	이 낮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
	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<u>개인정보파일</u>
	가. 회의 참석 수당 지급. 자

4. (생략)

- 제9조(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) 제9조(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 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 - 2. 법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 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

료・물품의 송부.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 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 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나.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 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 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.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 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 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 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

4. (현행과 같음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 항, 제24조의2제2항, 제25조제 6항(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 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

- 3. 4. (생략)
- ② 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 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 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・평가한 후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

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

 운용의 목적
- 2.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
- 3.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

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

 ·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
- 4.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

<<u>신</u> 설>

②

3 · 4 (혀해과 간음)

- 1.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
- 2. 평가 분야 및 항목
- 3.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· 평가
- 4. 제3호의 분석・평가 결과에

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

 획
- 5. 영향평가의 결과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

③ <삭 제>	
<u><신 설></u>	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제6호
	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
	을 공개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전산정보	관리국 사이버안전과
연락처	(031) 7767-820